

도서관자료 기준(제6조제2항 관련)

대학 구분 \ 도서관자료	최소 기본도서 수	최소 연간 증가 책 수
전문대학	학생 1명당 30권 이상	학생 1명당 1권 이상
전문대학 외의 대학	학생 1명당 70권 이상	학생 1명당 2권 이상

비고

1. "도서관자료"란 도서관자료 중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.
가.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인쇄자료
나.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필사자료
다. 전자자료 중 전자책
2. "기본도서 수"란 해당 대학도서관에 등록된 도서관자료의 총수를 말한다.
3. "연간 증가 책 수"란 해당 연도에 새로 등록된 도서관자료(해당 대학이 구입한 도서관자료에 한정한다)의 수를 말한다.
4. "전문대학"이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5. 도서관자료 외의 도서관자료 기준은 학생 수 및 도서관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·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.